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 추천 인사를 재정위원회 일반직 위원 자격에 포함〉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44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 개요	3
2. 검토의견	6
가. 재정위원회 운영 현황	6
나. 재정위원회 운영 개선	8
다.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	9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지영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30.
3. 회부연월일 : 2024. 10.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립대학에 설치되는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일반직위원은 해당 대학의 교원·직원·재학생과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등 중에서 국립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최근 정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정책 등의 사례를 보면, 지역대학 육성과 지역·대학의 동반 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가 있어야 처리 가능하나, 동법 시행규칙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가 있어 재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결격사유 조화에 대한 처리 근거가 미흡함.

이에 국립대학 소재지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국립대학의 재정위원회에 일반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3호 및 안 제10조의2 신설).

3. (생략) ④ ~ ⑦ (생략) <u><신설></u>	<u>·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한 사람</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u>제1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u> <u>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
---	---

「국립대학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이라 함)」은 2015년 기준에 운영되고 있던 기성회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기성회회계를 비롯한 비국고회계와 국고회계를 통합하여 대학회계를 설치함으로써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

또한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는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재정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위원 중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함.

그 중 당연직위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당해 대학의 재정·회계규

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음. 일반직위원 역시 동 규정에 근거하여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교원, 직원 및 재학생,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협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되, 교원·직원·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함.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대학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다만 등록금에 대해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대체함),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국립대학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¹⁾.

아울러, 같은 조 제6항은 대학의 장이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재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 역시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재정위원회의 위원 중 일반직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 국립대학이 소재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 시키려는 것으로,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 구축 정책²⁾과 같은 맥락에서 지역과 대학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생각됨.

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란 대학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대학을 육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임.

2. 검토의견

가. 재정위원회 운영 현황³⁾

거점국립대학교 9개 학교의 재정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고, 일반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 지역 관련 인사를 포함하고 있는 대학은 없음.

<거점국립대학의 재정위원회 구성('24.10월 기준)>

대학명	재정위원회 위원	
강원대학교	당연직(6)	교무처장, 기획처장, 교육지원처장, 사무국장, 도계총괄본부장, 재무분과위원장(평의원회)
	일반직(9)	교원 2명, 직원 2명, 재학생 2명, 강원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학교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3명
경북대학교	당연직(7)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국제교류처장, 사무국장, 교수회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
	일반직(8)	교원 2명, 직원 2명, 재학생 2명,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1명, 회계 또는 법률 전문가 1명
경상국립대학교	당연직(7)	교학부총장, 칠암캠퍼스부총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연구산학처장, 대외협력처장
	일반직(8)	교원 2명, 직원 2명, 재학생 2명, 대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 1명, 대학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부산대학교	당연직(7)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교수회 재정위원장
	일반직(8)	교원 2명, 직원 2명, 재학생 2명, 본교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1명, 그 밖에 대학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전남대학교	당연직(7)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기획조정처장, 사무국장, 학무본부장, 교수평의회 부의장
	일반직(8)	교원3명, 직원 2명, 재학생 2명,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그 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1명
전북대학교	당연직(7)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입학처장, 국제처장, 산학협력단장
	일반직(8)	교원 2명, 직원 2명, 재학생 2명(학부생 1명, 대학원생 1명), 대학 경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대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 1명
충남대학교	당연직(7)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산학연구본부장, 예산편성위원장
	일반직(8)	교원 2명, 직원 2명, 재학생 2명,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및 전문가 2명
충북대학교	당연직(7)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학장 대표
	일반직(8)	교원 2명, 직원 2명, 재학생 2명, 충북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1명, 그 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제주대학교	당연직(7)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진로취업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연구처장, 교수회 회장
	일반직(8)	교원 2명, 직원 2명, 재학생 2명, 제주대학교를 졸업한 재정전문가 1명, 총동창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3) 2023년 4월 기준으로 작성함. 각 대학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규정 참조.

한편, 공립대학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추천 인사, 해당 지역 공무원 등 다양한 지역 인사를 재정위원회의 당연직, 일반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음.

<공립대학의 재정위원회 구성('24.10.31.)>

대학명	재정위원회 위원	
서울시립대	당연직(6)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행정처장
	일반직(9)	교원·직원·재학생 각 2명, 동문 1명,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u> , 외부 1명
강원도립대	당연직(5)	교학처장, 기획홍보처장, 사무국장, 입학취업처장, <u>강원특별자치도 인재육성과장</u>
	일반직(10)	교원·직원·재학생 각 2명, 동문 1명, <u>강원도 추천 인사 1명,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추천 인사 2명</u>
경북도립대	당연직(3)	행정사무국장, 기획홍보처장, 교학처장
	일반직(10)	교원·직원·재학생 각 2명, 외부 4명, 재학생 2명, 대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 2명, 기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경남도립남해대학	당연직(6)	교무처장, 사무국장, 국제교류센터장, 산학협력단장, <u>도 교육 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관</u>
	일반직(9)	교원·직원·학생 각 2명, <u>경상남도의회 의원</u> , 외부 2명
경남도립거창대학	당연직(5)	교무부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u>도 교육지원담당관, 예산담당관</u>
	일반직(10)	교원·직원·학생 각 2명, <u>경상남도의원 2명</u> , 회계사 1명, 외부 1명
전남도립대	당연직(5)	교무기획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u>도 예산담당관, 희망인재육성과장</u>
	일반직(10)	교원·직원·학생 각 2명, <u>도의원, 담양군의원, 담양군 행정과장</u> , 대학 발전 기여 또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충북도립대	당연직(3)	교학처장, 기획협력처장, 사무국장
	일반직(12)	교원·직원·학생 각 2명, <u>*지역인사 4명</u> , 외부 2명 * 충청북도 관내 기관·단체장이나 개인을 관련 기관·단체 또는 총장이 추천

개정안은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시·도립대학의 경우와 같이 지역인사를 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과 지역

사회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나. 재정위원회 운영 개선

재정위원회는 대학회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 대학의 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균형 등 대학 내의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함.

한편, 현행 규정상 재정위원회는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독립적인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운영상 그 역할을 다하기에는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⁴⁾. 우선, 국립대학회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권은 국립대학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재정위원회는 대학의 장이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만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재정위원회가 대학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출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재정위원회가 예산의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음.

또한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제2항은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많은 대학에서 당연직위원을 7명, 일반직위원을 8명으로 할당하여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임명하는 당연직위원의 비중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있음. 아울러, 대부분의 대학은 예산편성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두고 있어 집행기구와 심의·의결기구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4) 김종성, 「국립대학의 재정·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이건근·정종희, 「공영형 사립대의 지역균형발전형 재정위원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2020.

개정안에 따라 재정위원회 일반직위원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대학의 장으로부터 독립된 외부 인사가 포함되어 위원 구성이 다양해지는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해 대학 집행부에 대한 견제·균형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지역사회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인이 대학 재정의 운영에 관여하게 됨에 따라 대학의 장에 대한 견제가 발생하여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 또한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의 국공립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발전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음.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와 대만의 신주과학산업단지 등의 사례를 참고할 때, 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은 인재 양성, 연구설비의 지원과 활용 등의 방식으로 지방정부 및 지역 기업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지역혁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⁵⁾.

아울러, 개정안과 같이 대학 내부의 지배구조 구성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 측면 외에 사회·문화적 차원의 지역 혁신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⁶⁾.

5) 차용우, 「지역혁신체계의 진화에 관한 비교연구: 소피아 앙티폴리스, 신주과학산업단지,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2010.

6) 염민호, 「지역혁신을 위한 지자체-대학 연계 협력 방안: 지방대학의 역할에 대한 대학보직자의 인식」, 2019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2020.

개정안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혁발전 및 혁신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서 재정위원회 일반직 위원에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향후 대학과 지역사회 사이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의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위원회 위원 중 지역 인사의 비중을 늘리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 지역 인사를 일반직위원 뿐만 아니라 당연직위원에도 포함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 간 협력 체계 강화가 필요한바, 국립대학 재정위원회에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 유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개정안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재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규정⁷⁾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있음.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

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⁸⁾하고 있는바, 이러한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

교육부는 법률로 상항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립대학회계법 제10조의 결격사유 확인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개정안의 요건 중 당사자 동의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의 사유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⁹⁾하고 있음. 개정안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9)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에 갖는 중요성, 민감성을 고려했을 때 당사자의 동의 요건을 유지하여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88